

문서번호	○○실-4368		차장	감사2부장	감사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8.10.02.		협 조			
공개여부	비공개(5)					

수시 복무점검 결과보고

-도서지역 및 휴양소 안전관리 기획 점검-

2018. 10. 2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 및 범위	1
3. 감사기간 및 인원	1
4. 감사중점 사항	1
II. 감사결과	2
1. 총평	2
2. 관련규정	3
3. 감사결과	3
4. 감사자 의견	6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7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7
IV. 기타사항	7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도서지역 직원 출장 시 해양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시정·제거하고, 자체 운영하고 있는 휴양소 및 신축사옥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 안전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임직원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이번 감사는 도서지역, ★★지역본부 신축사옥, 자체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휴양소운영관리지침」 등의 주요 의무 이행사항 준수 여부와 현장 점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8. 8. 30.부터 같은 해 9. 7.까지 6일간 감사자 4명이 도서지역, 신축사옥, 자체휴양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4. 감사중점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휴양소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의 주요 의무 이행사항인 해양안전관리,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

II

감사결과

1. 총평

이번 「도서지역 및 휴양소 안전관리 기획 점검」에서 임직원의 공직복무 점검 결과 일반적인 근무상황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차량 등 장비운행 안전통제와 일일 공사 종료 후 외부 출입통제를 위한 잠금장치 등이 미흡하여 현지에서 시정하였으며, 또한 아래 [표 1]과 같이 도서지역 안전관리와 휴양소 운영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 분야별 지적사항

구분	합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추징	회수	징계·문책
도서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1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	1				1			
합계	2				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도서지역 안전관리 미흡

□□□□지역본부 등 도서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7개 지역본부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지사 직원의 도서지역 출장 시 구명조끼 등이 2006년 이후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았음

(나)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취약) ○○○○지역본부 ●●지사의 경우 휴양소에 비치된 소화기 불량, 난간 누수, 전기 장반 불량 등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미흡

(운영관리 미흡)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르면 ☒☒ 휴양소는 기숙사로, ◎◎ 휴양소는 직원숙소로 등록되어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관련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시설안전관리)
- 「휴양소운영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제5조(이용기간)

3. 감사결과

가. 도서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3조(안전용품) 제1항에 “사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호복,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6년 도서지역 출장업무 지원방안 검토(◎◎◎◎팀-1755, 2006. 7. 5.)」에 따라 [표 2]와 같이 도서지역의 출장 시 부득이한 사유로 비정기 운항선 등을 이용할 경우 해양안전사고에 대비하여 7개 본부에 108개의 구명복을 구입 배부하여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표 2] 2006년 도서지역 구명복 배부현황

지역본부	구명조끼 배부수량	2018. 9.현재 보유량	비고
●●	6	x	
★★	9	x	
☆☆☆☆	15	x	
■ ■	18	x	
▲▲▲▲	45	x	
◆◆◆◆	9	x	
★★	6	x	
합계	108 개	현재 보유 수량 없음	

그러나, 이번 공직복무 점검 결과 도서지역에 필요한 안전용품 등이 주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2006년 이후에는 구명복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도서지역을 관리하는 지사에 구명복이 없어 직원 도서지역 출장에 따른 해양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¹⁾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시설안전관리)에 따르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붕괴 및 전도 점검, 소방설비 상태 점검, 건축물 등의 균열 등 노후상태 확인, 안전시설 및 설비 등 관리상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휴양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휴양소(지사포함)에서는 [그림] 과 같이 건물 내 소화기 7대 중 5대가 유효기간²⁾이 만료된 상태로 비치, 소화기 위치 표시 및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층 창문 난간이 누수가 되고 있었고, 휴양소 방에는 전기장판 합선 우려가 있는 등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취약하였다.

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 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불발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그림] ●● 휴양소 소화기 및 안전시설 현황



□ 휴양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휴양소에는 청소 및 관리하는 인력이 없이 직원들이 청소 및 빨래,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으며, 「휴양소운영관리지침」에 이용자³⁾과 화재발생시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휴양소운영관리지침」제5조(이용기간)을 보면 직원1명 1회당 2박3일을 한도로 되어 있으나, [표 3] 2018년 휴양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한명이 여러 개의 방을 예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등 운영관리에 대한 미흡한 면이 있었다.

3) 「휴양소운영관리지침」제4조(이용자격) 1. 직원과 그 가족, 2.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표 3] ●● 휴양소 이용 현황

[단위: 건/명]

년도	●● 휴양소 이용현황						
	예약건수	이용 인원	구분			1인 2실 이상 예약건수	비고
			직원	공무원	퇴직인		
2018	135	583	104	26	5	99	

※ 2018년 ●● 휴양소 관리현황 재구성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 휴양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퇴직인 예약이 24%를 넘어가고 있지만 화재보험을 검토한 결과 건물 및 집기비품, 측량(전산)장비 일체만 가입하고 대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리방법 및 보상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4. 감사자 의견

임직원들의 공직복무 점검 결과 일반적인 근무상황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경우 직원들이 도서지역에서 안전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배를 타고 출장을 가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휴양소의 경우 합숙소 형태(기숙사, 직원 숙소)로 사용되어 있으며, ●● 휴양소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자 또는 청소 용역업체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 외부인에 대한 대인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①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복 등 안전용품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하고,

② 휴양소 용도에 맞는 운영과 시설물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상규정 및 화재보험을 검토하는 등 도서지역 안전관리와 휴양소 운영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2018-36	본사 0000처	도서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권고			2개월	정☒☒ 이00
2018-40	본사 0000처	☉☉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	권고			2개월	김☒☒ 송☒☒

※ 처분요구: 2건(권고2건)

Ⅳ 기타사항

-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처분 요구
-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e-감사시스템 등록, 경영공시 등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부. 끝.

<별첨> 점검기관 감사반 현황

일자	점검기관	정원(명)	감사반	비고
계		159	2	
8. 30.(목)	★★지역본부 ★★지사	54	정☒☒ 이○●●	1반
	★★지역본부 서귀포지사	45	정☒☒ 이○●●	
8. 31.(금)	★★지역본부 신축사옥		정☒☒ 이○●●	
9. 3.(월)	▣▣지역본부 사천지사	19	정☒☒ 이○●●	
	▲▲▲▲지역본부 완도지사	13	정☒☒ 이○●●	
9. 4.(화)	▲▲▲▲지역본부 신안지사	14	정☒☒ 이○●●	
9. 5.(수)	■ ■ 지역본부 ☒☒지사	10	김☒☒ 송☒☒	2반
9. 6~7. (목, 금)	○○○○지역본부 ●●지사	4	김☒☒ 송☒☒	

일련번호	2018-36	감사자	국토정보직 3급 정○○ 국토정보직 4급 이○○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사 ○○○○처	처분요구일자	2018. 10.	회신기일 2개월(권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 고

제 목 도서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한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제3조(정의)에 따르면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으로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3조(안전용품)제1항에 따르면 “사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호복,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처에서는 매년 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조끼, 현장화, 안전보호복 및 안전표지판 등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06년 「도서지역 출장업무 지원방안 검토(□□□□□□□□팀-1755, 2006. 7. 5.)」에 따라 [표]와 같이 도서지역의 출장 시 부득이한 사유로 비정기 운항선 등을 이용할 경우 해양안전사고에 대비하여 7개 본부에 108개의 구명복을 구입 배부하여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표] 도서지역 구명복 배부현황(2006)

지역본부	지사	구명조끼 배부수량	2018. 9. 현재 보유량	비고
☒☒	■■구	6	×	
▲▲	□□	3	×	
	■□	6		
□○·○□	≡≡	3	×	
	≡≡	3		
	≡≡	3		
	☎☎	3		
	△△	3		
☒☒	△△	12	×	
	▶▶	6		
◀◀·☆☆	▷▷	6	×	
	▼▼1	3		
	▼▼2	3		
	◁◁	3		
	◆◆	3		
	◇◇	3		
	◆◆	3		
	◎◎	3		
	○○	9		
	①①	9		
●●·□□	◎◎	6	×	
	□□	3		
▲▲	남○○	3	×	
	북□□	3		
계	24개 지사	108개	없음	

그런데도, 이번 공직복무 점검 결과 2006년 이후 구명복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8년 9월 현재 도서지역을 관리하는 지사에 구명복이 없어 직원 도서지역 출장에 따른 해양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해양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용품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계기관 의견 □□□□처에서는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명복의 지급 및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감사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지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전용품 등을 배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구명복 등 안전용품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일련번호	2018-40	감사자	국토정보직 3급 김○○ 국토정보직 5급 송○○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사 ○○○○처	처분요구일자	2018. 10.	회신기일	2개월(권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 고

제 목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휴양소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소방 및 재난에 대비한 사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시설안전관리)에 따르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붕괴 및 전도 점검, 소방설비 상태 점검, 건축물 등의 균열 등 노후상태 확인, 안전시설 및 설비 등 관리상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휴양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휴양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휴양소(지사포함)에서는 [그림] 과 같이 건물 내 소화기 7대 중 5대가 유효기간⁵⁾이 만료된 상태로 비치, 소화기 위치 표시 및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층 창문 난간이 누수가 되고 있었고, 휴양소 방에는 전기장판 합선 우려가 있는 등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불발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그림] ●● 휴양소 소화기 및 안전시설 현황



2. 휴양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휴양소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휴양소가 아닌 “직원숙소”로 되어 있다. 또한, 휴양소 운영관리는 관리자가 시설의 수시점검과 수리, 환경위생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⁶⁾ 「휴양소운영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에 ‘관리자’란 휴양소를 관리하고 있는 지사장을 말한다.

●● 휴양소에는 청소 및 관리하는 인력이 없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휴양소운영관리지침」에 이용자⁷⁾과 화재발생시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휴양소운영관리지침」 제5조(이용기간)을 보면 직원1명 1회당 2박3일을 한도로 되어 있으나, [표]와 같이

6) 휴양소운영관리지침 제10조(운영관리) ①관리자는 휴양소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휴양소 및 부대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과 수리에 관한 사항, 2. 휴양소 이용자의 환경위생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휴양소운영관리지침」 제4조(이용자격) 1. 직원과 그 가족, 2.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2018년 휴양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한명이 여러 개의 방을 예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등 운영관리를 미흡하게 하였다.

[표] ○○ 휴양소 이용 현황

[단위: 건/명]

년도	○○ 휴양소 이용현황						
	예약건수	이용 인원	구분			1인 2실 이상 예약건수	비고
			직원	공무원	퇴직인		
2018	135	583	104	26	5	99	

※ 2018년 ○○ 휴양소 관리현황 재구성

3.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표]와 같이 ○○ 휴양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퇴직인 예약이 24%를 넘어가고 있지만 화재보험을 검토한 결과 건물 및 집기비품, 측량(전산)장비 일체만 가입하고 대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리방법 및 보상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처에서는 휴양소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감사 권고에 공감하고 있으며, 휴양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 휴양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상 규정 등 휴양소 운영에 대해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